

# 규 칙 부

---

제 1 장 총 칙

제 2 장 회원 및 총대

제 3 장 임원 및 임무

제 4 장 임원선거 및 임기

제 5 장 상비부 및 시찰회 위원

제 6 장 회 의

제 7 장 재 정

제 8 장 행정세칙

## **제 1 장 총칙**

제1조 :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경기노회라 칭한다.

제2조 : 본 회는 경기도 의왕시 성고가로 161 지번에 위치한다.

제3조 : 본 노회의 구역은 수도권과 지 교회 이전으로 인한 범위내로 한다.

제4조 : 본 노회의 대표는 노회장으로 한다.

## **제 2 장 회원 및 총대**

제5조 :

1) 회원 ① 본 노회의 회원은 정치 10장 3조, 4조에 준한다.

2) 총대 ① 장로 총대는 \*정치 10장 2조, 4조에 준한다.

3) 편목 ① 편목은 \*정치 15장 13조에 준한다.

## **제 3 장 임원 및 임무**

제6조 : 본 노회 임원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.

1) 노회장 1인 : 노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노회를 대표한다.

2) 부노회장 2인 : 부노회장(목사 1인, 장로 1인)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이 유고 할 시(우선 목사 1인) 이를 대행한다.

3) 서 기 1인 : 노회로 오는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및 청원, 보고, 문의 이명, 소송 등의 제반 서류를 접수한다.

①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.

② 회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각 교회로 발송한다.

③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의 명부를 작성한다.

4) 부서기 1인 :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
5) 회록서기 1인 : 회록을 작성하되 노회 폐회 후 20일 이내에 완전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보낸다..

6) 부회록서기 1인 :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 결의서를 작성하되 회록서기와 상의한 후 서기에게 전달한다.  
회록 서기가 유고할 시 이를 대행한다.

7) 회계 1인 : 재정 출납을 정리하며 매 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할 수 있다.

8) 부회계 1인 : 회계를 보좌하되 회계가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
## **제 4 장 임원선거 및 임기**

제7조 : 임원선거

1) 모든 임원은 각각 투표하여 선정하되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

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이 없을 시는 3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.

단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다수 일 때는 장립 순서대로 한다.

제8조 : 임원

- 1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 4월 정기 노회 시에 선출한다.
- 2) 결원 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노회 또는 임시 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 제 5장 상비부 및 시찰회 위원

제9조 : 1) 상비부 : 각 상비부원은 9명까지 할 수 있으되 12부를 둔다.

단,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.

- ① 헌의부
- ② 정치부
- ③ 재정부
- ④ 전도부
- ⑤ 교육부(당회록검사부)
- ⑥ 군,경목부
- ⑦ 고시부
- ⑧ 면려부
- ⑨ 규칙부 사회복지부 선교부 공천부

### 2) 선출방법

① 상비부원은 4월 정기 노회시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은 교체한다.

② 임기 만료 후의 회원은 그 부에 계속 잔류하지 못한다.

## 제10조 : 상비부의 임무

1) 헌의부 : 헌의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서기에게서 전달받고 본 노회에 허락을 얻어 해당 부서로 보낸다.

2) 정치부(당회록검사부) :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본 회가 맡긴 사항을 협의한다. 각 교회 당회록도 4월 노회 때 검사하며 지도 육성한다.

3) 재정부 : 노회재정(수입, 지출)을 편성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보고한다.

4) 전도부 :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되 남, 여 전도 연합회를 지도 육성하며 감독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 한다.

5) 교육부 : 모든 교육을 연구하여 지도하되 노회 산하 주일학교 연합회를 관리하며 지도한다.

6) 면려부 : 청년 연합회와 학생 면례회를 지도 육성한다.

7) 고시부 : 노회 내 각종 고시를 관리한다.(부원은 목사로 한다.)

### (1) 과목

① 목사고시 과목 : 신조, 권징조례, 예배모범, 목회학, 면접 (\*정치 10장 6조 7항)

② 장로고시 과목 : 성경, 소요리문답, 정치, 권징조례, 예배모범, 상식, 면접,  
단, 무임 장로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.

③ 목사후보생고시 : 성경, 영어, 상식, 면접

④ 전도사고시 : 성경, 영어, 정치, 예배모범, 상식, 면접

8) 군,경목부 : 군, 경목 사업을 추진한다.

9) 규칙부 : 규칙에 관한 일을 관리 한다.

10) 선교부 : 선교(전도)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.

11) 사회복지부 : 구제, 은급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.

12) 감사부 : 노회내의 회계 감사의 일을 한다. 단 목사 3인 장로2인의 비례로 구성한다.

13) 공천부 : 각 시찰장으로 한다.

## 제11조 : 시찰회

- 각 시찰은 4월 정기노회의 총대로 구성하고(노회 1개월 전) 본 노회에 보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 
시찰위원은 시찰 형편 따라 선정한다.

## 제12조 : 위원 및 감사

- 통계위원 3인 : 서기, 부서기는 통계위원이 되고 1명은 노회장이 지시한다.
- 천서위원 3인 : 노회장과 서기, 부서기로 한다.
- 회의순서 위원 9인 : 노회 임원이 회의순서 위원이 된다.
- 광고, 지시위원 : 노회장이 지명한다.

## 제13조 : 위원의 임무

- 통계 위원 :
  - 각 교회 현황을 보고 받고 통계를 작성한다.
  - 총회총대 투표 전 당회수와 그 현황을 보고한다.
- 천서 위원 :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한다.
- 회의순서위원 : 회의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한다.
- 광고 위원 :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- 지시위원 : 회의에 질서를 담당한다.

## 제14조 : 이사

- 교단 신학대학교와 기독신문사 및 총회선교회에 이사를 파송하되 무기명 투표하여 종다수로 한다.  
단,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를 하고, 2차 투표에서도 다수일 때는 장립순위로 한다.

## 제 6 장 회의

### 제15조 본 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.

- 정기노회 : 년 2차로 하되 4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와 10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로 한다.  
(단, 노회일자가 공휴일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)
- 임시노회 : 정치 제 10장 9조에 준 한다.
- 상비부 회의
  - 헌의부, 임원회, 정치부 공천부는 1주일 전 화요일에 노회 장소에서 준비회로 모인다.
  - 고시부 : 고시부는 노회 개최 15일 전 오후 5시에 모여 각종 고시를 실시한다.
  - 감사부 : 감사부는 노회 개최 15일 전 오후 5시 노회 장소에서 감사한다.
  - 상비부 소집 :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선기자가 할 수 있다.
  - 상비부 회의 : 성수가 미달되더라도 임시 결의 할 수 있다. 단,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- 상비부 소집 :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- 임원회 : 임원회는 임원으로 조직하되 회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.  
단, 임무는 노회가 위임한 사건만 취급한다.

## 제 7장 재정

제16조 : 본 노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상납금과 기타 특별헌금으로 운영한다.

제17조 : 본 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노회 이후 익년 4월 노회 전까지로 한다.

(단, 미납금은 이월금에 포함하며 미납 지교회의 모든 회원권은 노회비 완납 시 까지 효력 정지 할 수 있다.)

제18조 : 회계는 재정 상황을 노회 전에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.

## 제 8 장 행정세칙

제19조 : 노회에 상정하는 모든 서류는(소송 및 진정) 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하되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단, 타 노회 목사가 본 노회에 위임청빙이 있을 시는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.(\*정치 16장 2조) 그리고 당석에서 제안 하는 안건은 회원 10인 이상 연서로 개회 후 3시간 이내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0조 : 장로고시 응시자는 총회 성경통신과를 졸업해야 한다.

제21조 : 각 교회의 위임, 장립, 취임 건은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해야 한다.

사정이 있을 시는 한 회기(6개월)에 한하여 노회에 연기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 : 노회에 제출 서류

1) 강도사 인허 청원

- ① 본인의 청원서 1통
- ② 당회장 추천서 1통
- ③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
- ④ 이력서 1통
-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1통

2) 강도사 고시 청원

- ① 본인의 청원서 1통
- ② 당회장의 추천서 1통
- ③ 신학대학원 졸업증면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

3) 목사 고시청원

- ① 본인의 청원서 1통
- ② 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
- ③ 당회장 청원서 및 추천서 1통
- ④ 청빙서 1통
- ⑤ 이력서 1통
- ⑥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

4) 목사청빙

- ① 당회장의 청원서 1통
- ②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통

- ③ 이력서 1통
- ④ 청빙서 2통
-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1통

#### 5) 목사후보생 고시청원(전도사 고시)

- ① 당회장의 추천서 1통
- ② 본인의 청원서 1통
-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
- ④ 전도사 또는 신학지원 동기서 1통(200자 원고지 5매) 1통
- ⑤ 이력서 1통(세례 년도와 교회 명기할 것)
- ⑥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

제23조 : 노회 산하교회는 통계표를 총회와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.

통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원권, 발언권 및 여타 회원권이 중지 될 수 있다.

제24조 :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은 고시부에서 그 적성(신상)을 심사하고 신학 계속 청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.

제25조 :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은 \*정치 4장 4조 2항에 준한다.

제26조 :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가 주관한다. 단, 시찰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.

제27조 : 노회산하교회는 강도사, 전도사를 채용할 시 본 노회 소속한 자로 해야 한다.

단, 타 노회에 소속한 자를 채용할 시 6개월 이내에 이명토록 해야 한다.

제28조 : 본 규칙의 미비점은 총회 헌법과 각 치리회의 보통 회의 규칙 및 만국회의 통상규칙에 준한다.

제29조 : 본 규칙의 개정은 본 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0조 : 본 노회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
(총 8장 30조)

2012년 10월 9일(정기노회 1차 개정)

2021년 4월 6일(개정)

2025년 10월 14일(개정)